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42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7. 20.
3. 회부연월일 : 2026.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

1.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만 <u>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u> <u>학년</u>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4. --- <u>12세</u> ----- <u>6</u> <u>학년</u> -----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이하 “육아휴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임용권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러나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²⁾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현재 시행중에 있어, 공무원과 군인 간 육아휴직 제도상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군인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제도의

1)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2) 의안번호 제2218549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군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군무원인사법」은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음.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었으므로, 개정안은 군무원과 군인 간 인사관리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군인 및 군무원 육아휴직 현황]

(단위: 회)

구 분	군인			군무원	총계
	장교	부사관	계		
2021년	1,176	2,278	3,454	826	4,280
2022년	1,364	2,726	4,090	1,094	5,184
2023년	1,512	3,442	4,954	1,280	6,234
2024년	1,556	4,002	5,558	1,502	7,060
2025년	1,832	4,939	6,771	2,050	8,821

주: 각 수치는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군인 혹은 군무원의 육아휴직 횟수를 의미함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들의 양육 여건 보장 차원에서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과거에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후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한 바 있음.

[공무원 및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개정 연혁]

개정 내용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3세 미만→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	'07.3.29.	'07.12.21.
만 6세 이하→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11.5.23.	'11.7.25.
만 8세 이하→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26.6.2.	-

자료: 국방부

문 의 처

02)6788-5310